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813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2

I. 제안경위

2025년 1월 24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평형수의 처리량·교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24년 3월 22일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이 2025년 10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함)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수수료, 과태료 등 전자기록부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소유자는 제1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1의2. (생략)

<신설>

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기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①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

1의3. (생 략)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8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1. 1의2. (생 략) <신 설> 2.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11. (생 략) ② (생 략)	<u>자기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u> 1의4.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수료) ① ----- ----- -----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선박평형수는 선박에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의 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로,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에서는 선박평형수를 통하여 이동하는 유해수중생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평형수관리기준, 평형수관리시스템 승인, 평형수관리계획서, 평형수 기록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서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서 처리·교환·주입 및 배출한 선박평형수를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평형수의 처리량·교환량·주입량·배출량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선박평형수 관리기록부 기록사항(시행규칙 제20조제1항)

1. 선박평형수를 주입할 때	가. 일시, 장소 및 수심 나. 주입량 다.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2.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순환시키거나 처리할 때	가. 작업 일시 나. 순환 또는 처리된 양 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라.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3. 선박평형수를 해양에 배출할 때	가. 일시 및 장소 나. 배출량 및 잔량 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라.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4. 선박평형수를 처리시설로 배출할 때	가. 주입 일시 및 장소 나. 배출 일시 및 장소

	다. 배출량 또는 주입량 라. 항구 또는 처리시설 마.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바.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5.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으로 선박평형수를 주입 하거나 배출할 때	가. 일시 및 장소 나. 배출량 다. 주입, 배출 또는 누출의 발생 배경 등 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마.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6. 추가적인 작동 절차 및 비교	

□ 그런데, 최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 협약」(첨부1 참고)이 개정되면서¹⁾ 국제해사기구(IMO)는 동 협약에서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고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전자적 형태로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기록부로 관리할 수 있도록 A-1규칙(정의)에 전자기록부 항목을 추가하고, B-2 규칙(선박평형수 관리기록)에 전자기록부 사용 지침 등을 규정하였음.

□ 이에 개정안은 ①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기록부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기록시스템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IMO에서 개발한 지침과 일치함을 인증하는 적합확인서(첨부2 참고)의 발급 및 비치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협약의 개정에 따라 법을

1) '24.3.22.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 채택, '25.10.1. 발효 예정

정비하고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②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③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시 수수료,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대행기관에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대행하고 있고 이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또한 대행기관에서 발급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 의무를 위반한 자와 유사한 의무 위반으로 보이는바 동일하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로 생각됨.

- 참고로, 「해양환경관리법」과 같은 유사입법례에서도 선박오염물질기록부,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등에 기재할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대행이나 과태료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음.

[표] 유사 입법례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각 호에 규정된 기록부 또는 기관일지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1. 제30조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2. 제42조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3.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4.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기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의3.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 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다만, 현행법 제10조에서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대한 비치·기록·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다 같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6조에서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²⁾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만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대한 의무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으로 전자기록부의 사용을 위한 국내법 정비が必要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8

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기록·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첨부1

선박평형수 및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요

□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개요

- 선박에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의 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水). 특히 공선상태에서 추진기가 물에 잠기도록 하기 위해 주입

《 선박평형수를 통한 해양생물의 이동경로 》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 개요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 (목적) 국제해사기구는 평형수를 통한 국가간 생물종 이동에 따른 생태계 교란방지를 위해 '04.2.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채택(발효, '17.9.8)
- (적용대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
 - * 적용제외 : 평형수를 적재하도록 설계·건조되지 않은 선박, 군함 등
- (주요내용) 국가 간 생물종 이동 방지를 위해 평형수를 지정해역*에서 교환하거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통해 처리
 - *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200미터 해역 또는 50해리 200미터 해역에서 교환
 - ** 선박평형수 속의 수중생물·미생물을 전기분해·자외선 등으로 제거하는 장치

■ 선박물류수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4. X. X.>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DECLARATION of BWM CONVENTION ELECTRONIC
RECORD BOOK)

2004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라 함)의 요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의하여 발행 됨.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 reference to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BWM Convention)

선명 (Ship's name): _____

국제해사기구 번호 (IMO No.): _____

선박 기국 (Flag State of Ship): _____

총톤수 (Gross tonnage): _____

이 적합확인서는 전자기록시스템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관련 요건에 충족함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평가되었음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지침과 일치한다.

This is to declare that the electronic system designed to record e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BWM Convention installed on board the ship listed above has been assessed by this Administration to meet the relevant requirements as set out in the BWM Convention and is 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전자기록부 제조사 :

Electronic Record Book Manufacturer

전자기록부 공급자 :

Electronic Record Book Supplier

전자기록부 설치자 :

Electronic Record Book Installer

전자기록부 소프트웨어 명칭 및 버전 :

Electronic Record Book Software Name/Version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서 번호 :

Electronic Record Book is in accordance with MEPC Resolution/s

전자기록부 설치일자 :

Date of installation(dd/mm/yy)

이 적합확인서의 사본은 전자기록부가 비치된 선박에 항상 보관되어야 합니다.

A copy of this declaration should be carried on board a ship fitted with this Electronic Record Book at all times.

년 월 일
Year Month Day

해양수산부장관 (서명 또는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장 (서명 또는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297mm(책상지 80g/㎡)